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40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조배숙 · 김대식 · 곽규택
고동진 · 박성훈 · 박충권
박준태 · 강명구 · 박형수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35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때

제45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의2.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받고 그 영업을 계속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신설>

10. · 11.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받고 그 영업을 계속한 자

10. · 11. (현행과 같음)